

<자료>

中國社會科學院 法學研究所 法律史研究室  
中國法制史 관련 稀貴文獻 整理의 成果\*

楊一凡\*\*

문자로 고증할 수 있는 대량의 문헌과 출토된 문물은 중국법제의 발전역사가 4,00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先秦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각 왕조가 대량의 법률을 반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甲骨, 金文, 簡牘에서 역사문서[檔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국왕들의 詔書, 榜文에서 농촌사회의 규약[鄉規民約]과 각종 계약 및 민사관습자료에 이르기까지 법률제도와 법률사상에 관한 典籍資料는 무수히 많다. 중국 法制史 文獻의 광대함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정도이다. 오랜 세월의 흐름으로 인해 明代(1368~1620) 및 명대 이전 각 왕조의 법률은 많이 遺失되었는데, 현재 알려진 일부 법제사 문헌은 그 대부분이 국내의 각 지역과 민간인들의 수중에 보관되어 있어 法史學 연구에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 中國法制史를 서술한 既刊의 많은 저서들에서 이러저러한 오류가 나타난 중요한 원인도 상당한 부분 기초적인 法制史文獻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제사 관련 희귀문헌을 발굴하여 수집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제때에 진행하지 않으면 전반적인 법제사연구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일부 문헌의 손상과 유실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 본 자료는 中國社會科學院 法學研究所와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한국법연구센터에서 2002년 6월 28일 北京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韓中 法律交流의 史的 考察”에서 발표된 것이다.

\*\* 中國社會科學院 法學研究所 法制史主任 教授

법제사 관련 희귀문헌을 발굴·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은 중국법률 문화유산의 승계에 유익한 작업이고, 중국법제사 연구를 추진하는 기초작업이기도 하다. 그래서 1980년대 초로부터 法律史研究室에서는 “중국 법제사 관련 희귀문헌의 정리 및 연구(中國稀見法律文獻的整理與研究)”, “법제사사료와 법사의 중대의문 고증(法律史料和法史重大疑義考證)”을 본 연구실 연구사업의 중점으로 선정하였다. 198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20여 년간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본 연구실에서는 당해 영역에서 일련의 중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본고에서는 본 연구실이 법제사 관련 희귀문헌을 정리한 성과 및 관련 중요연구사업의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1. 법제사 관련 희귀문헌의 수집 및 정리의 진행상황

法律史研究室은 여러 해의 조사·연구를 통해 현재 중국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중국법제사 문헌이 보존되어 있는 현황을 기본적으로 명확히 하였다.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중국 역대 왕조의 法典, 詔書, 條例, 法律註釋類 도서는 2천여 종인데 그 중 1/3 이상은 善本, 珍本, 孤本이다. 이러한 법제사 문헌은 주로 중국 대륙, 대만 그리고 일본, 미국, 한국, 러시아 등의 도서관에 보존되어 있다. 중국 대륙과 일본에 보존된 법제사 문헌이 제일 많고, 일부 법제사 문헌은 민간인에 보존되어 있다. 농촌사회의 규약, 가족법, 각종 계약, 判例·判牘, 법률고문서, 소수민족 관습법과 기타 민사관습자료는 현재 발견된 자료가 아주 풍부한 반면에 아직 정확한 통계수치가 없는데, 아마 수십만 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농촌사회의 규약 및 가족법에 관한 자료는 上海, 浙江 지역에만 해도 10여만 종에 달한다. 소수민족 법제사 문헌은 중국 西南 各省, 自治區에 많이 보존되었다.

법제사 관련 희귀문헌의 보존현황과 법제사연구에 대한 절박한 수요 및 수집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본 연구실은 1981년에서 2010년까지 점진적으로 10개 대형 법제사 관련 문헌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점진적으로 완성할 예정이다. 이러한 연구

계획의 완성은 법제사연구에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몇 십 년 나아가서는 더욱 오랜 기간 동안 당해 분야에 대한 후세 학자들의 연구를 위한 광활한 ‘길’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실의 법제사 문헌정리 계획과 연구계획의 추진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 법제사 문헌정리 계획 및 현황

1. 전체 기획	중대총수 : 10 책 수 : 100冊 정도 자 수 : 5천여 만 자 완성시간 : 1981 - 2010년
2. 既出版 항목	1. 中國珍稀法律典籍集成(14책); 社會科學院·국가 증점 1994년 8월 출판 2. 中國珍稀法律典籍續編(10책); 社會科學院·국가 증점, 2002년 6월 출판 3. 革命根據地法制文獻選編(4책); 국가 증점 1981, 1984년 출판 4. 沈家本未刻書集彙(2책); 社會科學院 증점 1996년 12월 출판
3. 近刊 項目(2002년)	5. 沈家本未刻書集彙續編(2책); 社會科學院 증점
4. 現 作業 項目	6. 刑案匯覽(10책); 法學研究所 증점(2002년 완성 예정) 7. 秋審文獻(20책); 社會科學院 증점(2004년 완성 예정)
5. 豫定 項目	8. 中國珍稀法律典籍三編(16책) 9. 少數民族習慣法(10책) 10. 鄉規民約大全(12책)

법제사 문헌정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본 연구실에서는 법제사료와 법제사에서 중대한 의문점에 대한 考證作業을 진행하였다. 지난 7년 간의 노력으로 『中國法制史考證(32책)』 가운데 앞 15책(1~15책)을 완성하여 2002년 10월 中國社會科學出版社에서 출판할 예정이다. 그 외 1978년 이래 본 연구실 소속학자들이 편찬 및 출판한 학술저서, 번역저서, 교재와 기타 서적은 80여만 권에 달하고, 7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실에서는 그 동안 발행한 학술성적이 상을 수여 받았는데 그 중 國家級 賞을 7개, 省 및 部級 賞을 20여 개 받았다.

## 2. 5대 법제사 관련 희귀문헌 정리 내용 개괄

### (1) 『中國珍稀法律典籍集成』(14冊)

『中國珍稀法律典籍集成(14冊)』은 중국 사회과학원의 중요프로젝트이다(이하 『集成』으로 함; 역자). 劉海年, 楊一凡이 주요편집하고 본 연구실 소속의 吳建璠, 徐立志, 齊鈞과 법학계, 역사학계, 고고학계의 교수와 전문가 20여명이 點校에 참여하였다. 이 『集成』은 14책, 960여 만자로 구성되었는데, 과학출판사가 1994년 8월에 출판하였다.

『集成』은 중국 대륙, 대만 그리고 일본, 미국, 한국, 러시아 등 국내외 각 지역에 보존되어 있는 중국법제사 관련 도서 60종을 수록하였는데, 그 중 5권은 文物, 歷史文書 가운데서 법제사 자료를 발굴·정리하고 또 註釋한 성과이다. 8권은 古籍에 대한 校勘이고, 1권은 ‘西夏 天盛(1149~1169)律令’에 대한 번역이다.

『集成』은 甲, 乙, 丙 3편으로 나뉘어져 있다. 甲篇은 5책인데 수록된 문헌으로는 주로 甲骨, 金文, 簡牘 중의 법제사 관련 문헌, 漢代 屯戍遺簡 중의 법제사 관련 문헌, 吐魯番 법제사 관련 문서, 敦煌의 법제사 관련 문서, 西夏 法典이다. 乙篇은 6책인데 朝鮮의 『大明律直解』에 기재된 洪武 22年(1389)의 ‘律文’, 『律條直引』, 『軍政條例』, 『憲綱事類』, 『吏部條例』, 弘治(明 孝宗; 1487~1505) 연간의 『問刑條例』, 『嘉靖新例』, 嘉靖(明 世宗; 1521~1566) 重修 『問刑條例』, 『宗藩條例』, 『嘉隆新例』, 『皇明詔令』, 『皇明條法事類纂』 등 보기 드문 明代 법률도서 25종이 수록되었다. 丙篇은 3책으로 구성되었는데 殿本 『大清律例』, 『續纂條例』, 盛京 만주어 고문서 중의 律令, 『蒙古律例』, 『西寧青海番夷成例』, 『欽定回疆則例』, 『刑部現行則例』 등이 수록되었다.

『集成』의 정리 및 교감작업에는 10년의 세월이 걸렸는데, 그 동안 『集成』의 정리에 참여한 학자들은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 『集成』의 학술적 가치는 아래와 같다. 첫째, 『集成』에 수록된 문헌과 사료는 보기 드물며, 최초로 정리 및 교감된 것인데 국내외에는 아직 위와 유사한 법제사 관련 자료를 종합·집성한 자료집은 나타난 적이 없다. 위의 문헌 중 孤本에 속하는 문헌은 7백여 만 자, 珍本에 속하

는 문헌은 2백여 만 자인데 그 중 4백여 만 자에 달하는 문헌은 중국 대륙에 보존되어 있지 않다. 이 점에서 『集成』의 출판은 중국 도서관 자료의 공백을 채웠다. 둘째, 『集成』에 수록된 문헌 중 3백여 만 자는 갑골, 금문, 간독의 역사서류로부터 수록 및 정리한 것인데, 이 가운데 수십만 자는 소수민족문자를 번역한 것이다. 정리과정에서 편저자들은 본문에 많은 주석하였는데 이는 저자가 여러 해 동안 연구한 성과의 결과이다. 기타 문헌에 대한 고감에 있어서 편저자들은 30여만 자에 달하는 校勘記, 板本校勘表와 校勘說明을 서술하여 고대典籍에 존재하는 수만 개의 착오를 바로잡았다. 따라서 이 점에서 『集成』은 높은 사료적 가치뿐만 아니라 높은 학술적 가치도 지니고 있다. 셋째, 『集成』에 수록된 문헌은 각 왕조의 대표적인 기본법률자료이며, 많은 내용은 행정, 경제, 군사, 문화, 대외관계에 관한 입법이므로 中國政治制度史, 經濟史, 軍事史, 文化史 등에 대해서도 높은 사료적 가치를 갖고 있다.

『集成』이 출판된 후 국내외의 학술계와 출판계는 큰 반응을 보였고, 「人民日報」, 「光明日報」 등 여러 신문, 잡지사들은 기사를 발표하였다. 『集成』이 “극히 높은 사료적 가치를 갖고 있다”, “100년간 중국법을 고대서적을 정리한 가장 중요한 성과이다”, “사회과학원 나아가서는 전국 사회과학연구의 최고수준을 보여주었다”(1996년 9월 28일 「人民日報」와 新華社 원고 참조)라고 극찬하였다. 『集成』은 1996년에 제2회 ‘중국사회과학원 優秀科學研究成果榮譽賞’을 수여 받았으며, 그 수정본은 “十五 國家重點圖書出版項目”으로 선정되었다.

## (2) 『中國珍稀法律典籍續編』(10책)

『中國珍稀法律典籍續編(10책)』은 『中國珍稀法律典籍集成』의 후속편이다(이하 『續編』으로 약칭함, 역자). 전국 고대서적정리중점프로젝트 및 “十五 국가중점도서출판기획항목”이고, 중국사회과학원 중외과제인 A급 프로젝트이다. 楊一凡, 田濤가 주요편집을 담당하였다. 본 책은 10권, 550여만 자로 구성되었는데 黑龍江인민출판사가 2002년 6월에 출판하였다.

본 책은 국내외 각 지역에 보존되어 있는 중화법률도서 珍本 및 孤本 50여종을

수록하였는데 그 주요문헌으로는 아래와 같다. 『慶元條法事類』, 『吏部條法』, 『通制條格』, 『洪武禮制』, 『諸司職掌』, 『禮儀定式』, 『孝慈錄』, 『學校格式』, 『稽古定制』, 『節行事例』, 洪武永樂 시기의 榜文, 『律解辯疑』, 『軍政條例類考』, 『嘉靖事例』, 順治 榜文, 順治二年律, 順治三年律, 『欽定八旗則例』, 『欽定宮中則例』, 乾隆 『山東憲規』, 『新疆條款』, 『刺字條款』, 『唐明清 三律匯編』(薛允升 초고), 『夜郎郡法規』, 吐番三律, 1640년 몽고 『衛拉特法典』, 『阿勒坦汗法典』, 藏巴第悉噶瑪丹迥旺布 시기에 제정된 『十六法典』, 달레라마 5세 시기에 제정된 『十三法典』, 『欽定二十九條章程』, 果洛阿將三 마을법규, 阿哇鐵吾 마을 제도 및 법규, 浪加 마을 제도 및 법규, 莫壩 마을 옛 제도와 법규, 果洛 옛 제도 중의 마을법규, 玉樹 마을제도 및 법규, 千卜泉 마을제도 및 법규, 黃科 마을제도 및 법규, 阿典乎 마을법규, 芒萊 및 干塔萊법전, 坦麻善阿侃漢紹哈, 孟連宜撫司법규, 西雙版納 타이족 봉건법규, 西雙版納 타이족 봉건법규 및 예의절차, 西雙版納 勐海 타이족 봉건寨規 및 勐禮, 西雙版納 타이족 “哈滾”, 가족분쟁 해결법이다. 또한 소수민족 관습법, 농촌지역사회의 규약 100여 종을 수록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1996년부터 시행되어 5년만에 마무리되었다. 본 책에 수록된 문헌은 珍本, 孤本 또는 초고이다. 그 사료적 가치는 아래와 같다. (1)상당수의 고대 행정에 관한 단행법률법규를 수록하였는데 위의 문헌들은 중국 고대 행정입법의 연구 그리고 중국법계의 법률형식을 정확히 인식하는데 중요하다. (2)상당수의 소수민족법전법규 및 관습법과 농촌지역사회의 규약을 수록하였다. 위의 문헌들은 법률의 기원, 인류학과 민족학, 민속학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3) 일부 보기 드문 명청시기의 榜文 및 『山東憲規』 등 지방법규를 최초로 공포하였다. (4) 『律解辯疑』, 『唐明清 三律匯編』 등 율학문헌을 수록하였는데 이는 중국 고대 율학의 연구에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갖고 있다.

### (3) 『沈家本未刻書集纂』 및 그 『補編』(합계 4권)

『沈家本未刻書集纂』(2권, 190여만 자)은 劉海年, 韓延龍이 주요편집을 담당하고, 본 연구실의 모든 학자들과 기타 대학의 학자들이 교정작업에 참여하였으며,

중국사회과학출판사가 1996년 12월에 출판하였다. 『補編』(2권, 200여만 자)은 최근 중국사회과학출판사에서 출판할 예정이다.

『沈家本未刻書集纂』은 청조말기 유명한 법학자 沈家本の 21종 초고 도합 66권을 수록하였다. 즉 『律例校勘記』 5권, 『律例偶箋』 3권, 『律例雜說』 2권, 『刑法雜考』 1권, 『刑部奏刪新律例』 5권, 『最新法部通行章程』 1권, 『秋讞須知』 10권, 『舊抄內定律例稿本』 6권, 『刑案刪存』 6권, 『駁稿匯存』 1권, 『奏讞匯存』 1권, 『壓線編』 1권, 『雪堂公牘』 1권, 『晉書五行刑法二志校語』 1권, 『明史瑣言』 1권, 『古今官名異同考』 1권, 『周官書名考古偶纂』 1권, 『日南讀書記』 18권, 『奇姓匯抄』 1권, 『吳興瑣語』 1권, 『借書記』 1권 등이다.

『補編』은 沈家本の 원고 13종을 수록하였다. 『讀令贅言』 1권, 『續修會典事例』 1권, 『婦女實發律例匯說』 1권, 『紱雪堂故事』 1권, 『紱雪堂故事刪謄』 1권, 『秋審比較條款附案』(丙午 판본, 불완전한 초고를 참조) 5권, 『律例精言歌括』 1권, 『說文引經異同』 21권, 『三國志校勘記』 6권, 『沈觀雜鈔』 1권, 『藥言』 1권, 『冰言』 1권, 『沈家本日記』 14冊 등이다.

沈家本은 舊律에 능란하고, 중국과 서방에 능통하여 중국법률의 근대화와 중국근대 법학의 부흥에서 선인들을 계승하여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의 저서는 많은데 이미 발간된 『寄篋文存』, 『沈寄篋先生遺書』 외에도 아직 대량의 저서가 발간되지 못하였다. 『集纂』과 『補編』에 수록된 저서는 아직 발간되지 않은 沈家本の 저서인데 이번에 최초로 발간되었다. 아직 발간되지 않은 저서의 대부분은 법학저서인데 그 내용은 전통 율학과 司法實踐에 관한 연구이고, 일부 저서는 청조 말기 법률개혁에 관한 것이다. 발간되지 않은 저서는 중국 법률 발전사와 사상을 연구함에 소중한 자료로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갖고 있다. 『集纂』은 2000년에 제3회 중국사회과학원 우수과학연구 성과상을 수여 받았다.

#### (4) 『刑案匯覽』

『刑案匯覽』은 10권으로 구성된 본 연구소의 중점프로젝트인데 본 연구실 학자들이 정리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1999년부터 시행되어 3년 동안의 시간이 걸렸는

데 정리작업이 대체로 마무리되었다. 현재 인쇄 전의 탈고,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법률출판사에서 출판하기로 되어있다.

『刑案匯覽』은 청조 道光(宣宗; 1820~1850), 光緒(德宗; 1875~1908) 시기에 편찬된 사법사례집인데 중국 현재 보존된 최대 규모 및 체계적인 청조 시기의 司法事例集이다. 『刑案匯覽』으로 명명된 문헌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연구실에서 정리한 저서는 청조시기에 보편적으로 중시된 저서들인데 주로 아래와 같다. 『刑案匯覽』 60권, 『續增刑案匯覽』 16권, 『新增刑案匯覽』 16권, 『刑案匯覽續編』 32권에 합계 450여만 자이다. 『刑案匯覽』은 道光시기에 편집되었는데 道光 14年(1834) 이전의 사례를 수록하였다. 『續增刑案匯覽』은 道光시기에, 『新增刑案匯覽』은 光緒시기에 편집되었는데 『刑案匯覽』에 대한 보완이다. 그 중 『新增刑案匯覽』 중의 일부분은 道光시기의 사례이다. 『刑案匯覽續編』은 光緒시기에 편집되었는데 道光이후의 사례이다.

『刑案匯覽』은 大清律例 체제에 따라 편찬되었다. 즉 名例, 吏律, 戶律, 禮律, 兵律, 刑律, 工律에 따라 배열되었다. 율은 類로 분류되었다. 예컨대, 戶律은 戶役, 田宅, 婚姻, 倉庫, 課程, 錢債, 市塵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刑律은 도둑 및 절도(賊盜), 인명(人命), 구타(鬪毆), 罵詈, 訴訟, 受贓, 사기 및 위조(詐僞), 犯奸, 雜犯, 捕亡, 斷獄으로 나뉘어져 있다. 類는 律條에 따라 구성되었는데 律條마다 사례를 수록하였는데 일부 律條에는 사례가 없다. 『續增刑案匯覽』, 『新增刑案匯覽』은 사례가 없는 일부 律條에 대해 보완하고, 기존에 사례가 있던 律條에 대해서도 보완을 하였다. 『刑案匯覽續編』과 『刑案匯覽』의 체제는 같다. 『刑案匯覽』의 첫머리에는 『敕典章程』, 끝머리에는 『刑部事宜』가 있다.

『刑案匯覽』의 사례는 주로 刑部說帖, 邸抄 및 그 당시 일부 정부 또는 민간에서 편찬한 사례집인데 그 중 刑部說帖의 비중이 제일 크다. 『刑案匯覽』에 수록된 사례는 그 성질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직예(直隸), 지방의 各省에서 작성한 사례를 刑部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에서 확정하지 못하는 의심스러운 안건을 刑部에 물어보는 것이다. 刑部の 심사와 지시는 2개 등급으로 나뉘어진다. 우선, 상응한 刑部司에서 진행하는 것인데, 예

하면 山東, 山西, 陝西司이다. 상응한 刑部司는 지방에서 보고한 안전에 대해 심사를 하고, 처리의견을 제시한다. 심사안전에 대한 처리방식은 照復, 기각[駁回], 改判이다. 刑部의 堂上官은 각 刑部司의 의견에 대해 재심[復核]을 하거나, 照復 혹은 기각을 한다. 일부 사례에서는 刑部의 당상관은 刑部司의 의견을 기각하고, 지방에서 확정된 판결에 동의한다. 대부분의 경우, 刑部에서 기각한 안전에 대해 지방에서는 刑部의 의견에 따라 개정하고, 刑部에 다시 심사를 청구한다. 일부 안전에 대해 지방에서 기존의 판결을 여전히 유지할 경우 刑部는 照復을 하거나 재차 기각 또는 改判을 한다. 일부 안전은 여러 차례 기각당하기도 하였다.

『刑案匯覽』의 대부분 안전은 율과 例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거나 상응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관련된 律例 혹은 사례에 근거하여 처리한 안전이다. 같은 律條 아래의 안전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처리를 하게 되는데, 예컨대, 범인이 체포에 저항한 것에 대해 10여 종의 처리방식이 있다. 『刑案匯覽』은 청조시기 律, 例, 사례간의 관계 및 각자의 효력을 보여주는 한편, 청조시기 司法원칙들을 보여주어 청조시기의 사법 특히 소송제도를 연구하는 중요한 문헌이다. 또한 사례에 있어서 사법판원은 律, 例, 사례에 대해 상응한 진술 혹은 해석을 하였는데 청조시기 律學을 연구하는 제일 중요한 문헌 중의 하나이다.

##### (5) 『秋審文獻』(20권)

본 과제는 중국사회과학원 중대과제인 A급 프로젝트로써 본 연구실의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정리를 책임졌다. 본 프로젝트의 정리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2004년에 완성되어 출판될 예정이다.

秋審은 청조시기 매년 가을에 중앙사법기구와 各部의 대신들이 各省에서 보고한 사형, 중범죄자를 심사하는 제도인데, 그 처리결과는 대체 아래의 5가지로 나뉘어진다. 情實, 緩決, 可矜, 留養承祀, 可疑이다. 情實 즉 죄가 사실임을 의미한다. 緩決은 죄가 제일 엄중한 것이 아니므로 사형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가리킨다. 可矜은 同情을 받는 경우 즉 노인, 어린이, 불구자[老幼殘廢]가 범한 죄 및 부모를 구하기 위한 범죄를 가리킨다. 留養承祀는 범죄자가 독생자로 부모가 병들었

거나 나이가 많아 봉양하는 사람이 없음을 가리킨다. 可疑는 안건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연구결정이 필요함을 가리킨다. 죄가 사실일 경우 10월 전에 처결한다. 可矜자의 경우 流刑, 徒刑에 처하고 緩決과 留養承祀의 경우 정해진 율에 따라 감형한다.

현재 보존된 秋審 문헌종류는 다양한데 그 중 專題文獻은 80여 종이다. 예컨대 『秋審章程』, 『秋審略例』, 『秋審條款及按語』, 『秋讞志』, 『秋審鈎法』, 『秋審直省附錄』, 『秋審指掌』, 『秋審舊式』, 『秋曹稿式』, 『秋審匯奏』, 『秋審分類批辭』, 『秋審檔案』, 『秋審比較匯案』, 『秋審瑣言』, 『秋審查筆』, 『秋曹雜記』, 『秋讞輯要』, 『秋讞成案』, 『秋審實緩』, 『秋審實緩比較成案及續編』, 『刑部直隸各省重囚招冊』 등이다. 그 외 秋審과 관련된 문헌은 70여 종이다. 秋審문헌의 내용은 대체로 秋審 관련 법률규범, 秋審論述, 秋審成案과 秋審 전의 안건 원자료이다. 위에서 말한 문헌은 현재 국내 20여 개 도서관에 보존되어 있는데 본 연구소에 보존된 문헌이 제일 많다. 秋審관련 문헌의 상당한 부분은 孤本 혹은 抄本이다.

### 3. 법률사료 및 중요 疑義문제에 대한 고증

본 연구실은 회소법률사료를 정리하는 한편 법률문헌판본에 대한 연구와 법률사료에 대한 고증을 중요시하였다. 본 연구실은 이미 100여 종에 달하는 법률문헌의 판본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여 대량의 校勘記, 校對表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秦漢法制論考』, 『明初重典考』, 『明大誥研究』, 『洪武法律典籍考證』, 『明代司法初考』, 『중국법률사 국제학술세미나 논문집』 등 법률사료와 법률사 고증에 관한 저서, 논문집을 출판하였다. 1995년 이후 6년 간의 시간을 들여 『中國法制史考證』(32권)의 저술 및 편집작업을 진행하였다.

『중국법제사고증』은 중국사회과학원의 전략적 프로젝트이다. 본 과제를 과학연구사업의 중점으로 한 이유는 주로 다음의 인식 때문이다. 첫째, 여러 원인으로 인해 역대 역사서적 중 법제에 관련된 기재가 빠지거나 왜곡된 부분이 많고, 많은

법률문헌에 오류가 적잖게 있으며, 중국법제에 대한 규명에 기존의 저서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쟁론이 있는 일부 문제를 더욱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사료는 법제사 연구의 기초이다. 일부 기본적인 법률문헌과 기존의 연구성과가 반복적으로 이용되는데 기존의 착오와 미비한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용자들로 하여금 착각을 하게 한다. 그래서 이와 관련이 된 보편적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풍부한 사료에 근거하여 고증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100여 년간의 법제사연구 논저를 상세하게 열독함에 있어서 고증류 성과분야의 학술적 견해가 제일 선명하다. 본 과제의 수행이 기본법률사료와 법률사의 중요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추진하고, 법률사 연구를 위해 최신연구성과를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 100년 법률사 고증성과의 핵심부분을 집성하여 법제사 기초연구를 추진하여 당대 및 후세 학자들의 법률사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중국법제사고증』을 편집하는 기본취지이다.

『중국법제사고증』은 100여 년 이래 국내외 법학은 물론 역사학, 고고학, 민족학, 사회학 등을 포함한 여러 학계가 수행한 중국법제사 학술성과를 고증한 集成이다. 본 저서의 모든 내용은 저자의 독립적인 견해이거나 역사서적의 기재착오와 기존 학자들이 확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수정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疑義 및 論爭點에 대한 고증이거나 회소법률사료 및 그 판본에 대한 고증해석이므로 중국법제사연구의 대표적 성과이다. 『중국법제사고증』은 갑, 을, 병, 정편으로 편집되었는데 32권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의 15권(1권-15권)갑을병편을 포함, 800여만 자)은 2002년 12월에 중국사회과학출판사에서 출판될 예정이다.

본 저서는 楊一凡이 총편집을 맡았고, 馬小紅, 高旭晨, 龍韶華, 蘇亦工 등 본 연구실 학자들이 갑편을 편집하였고, 본 연구실의 모든 학자들과 국내외의 100여명의 학자(그 중 대만학자 19명, 일본학자 41명)와 유명한 교수, 전문가들이 본 저서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본 저서 각 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甲編：『歷代法制考』이다. 본 편은 당대 중국학자들이 저술한 역대 법제고증에 관련된 저서이다. 『夏商周法制考』, 『戰國秦法制考』, 『兩漢魏晉南北朝法制

考』, 『隋唐法制考』, 『宋遼金元法制考』, 『明代法制考』, 『清代法制考』 등 7책으로 나뉘어져 있다.

乙編 : 『法史考證重要論文選編』이다. 100여 년간 중국학자들이 법률사 고증 관련 논문 105편을 수록하였다. 『律令考』, 『刑制獄訟考』, 『法制叢考』, 『法律史料考釋』 등 4책으로 편집되었다. 본 편의 부록에는 『近百年中國學者考證法史重要論文著作目錄』이 수록되어 있다.

丙編 : 『日本學者考證中國法制史重要成果選譯』이다. 일본학자들이 중국법제사를 고증한 증요논문 50편을 수록하였는데 『通代·先秦·秦·漢』, 『魏晉南北朝·隋唐』, 『宋·西夏·遼·元』, 『明·清』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본 편의 부록에는 『近百年日本學者考證中國法制史重要論文著作目錄』이 수록되어 있다.

丁編 : 『法史考證系列專著』인데 17권으로 구성되었다. 여러 해 동안 본 연구실과 법률사 관련 여러 학자들은 자신이 중사하는 분야에서 성실하고도 창조적인 연구를 통해 중대한 학술성과를 이룩하였다. 본 편에 수록된 것은 위의 학자들이 저술한 전문적 고증성과로써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甲骨, 金文法律史料考釋, 碑刻法律史料考, 律注文獻通考, 比·故事·例考辨, 歷代充軍考, 北魏職官制度考, 隋代法制考, 唐律叢考, 唐式集佚與式文研究, 五代法制考, 宋代法制考, 明代稀見法律文獻版本考略, 秋審文獻考證, 清代中俄條約考, 中國近代法制若干史實考 등이다. 丁編에 수록된 학술저서들은 여러 해 동안 연구·저술한 성과이고, 그 초고가 마무리되어 현재 수정 혹은 심사하고 있는 중인데 2003년 말에 중국사회과학출판사에 의해 출판될 예정이다.

鄭育植\* · 金雪梅\*\* 역

\* 정공식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김설매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